

# 『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7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9일

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토지정보과장 백 창 운

나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전부개정(2020. 12. 8 공포, 2021. 6. 9 시행)에 따라  
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 
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(현행)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
(개정)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- 건물번호판 ,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주소정보 생활화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11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## 3. 검토의견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은,

- 상위법이 전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「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,
-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이 입체화대형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 : 원안가결